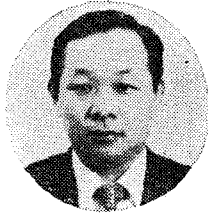


特許技術側面에서 본 微生物醱酵工業

— 부다페스트條約과 先進國動向 —



□ 머리말

裴 武

〈韓國科學技術研究所 應用微生物研究室長〉

우리나라는 1979년 3월 1일을 기하여 정식으로 세계지적소유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하였고, 이어 1980년 5월 4일에는 파리협약에 정식 가입하였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전에는 공업소유권의 관해서는 국내주의적 입장에서 특허정책을 폈고 이어 그 후 공업소유권 상호보호협정 및 우선권을 인정하는 단계에 돌입하여 국가간 협정을 맺음으로써 준국제주의적 정책을 펴온 것이다. 그러다가 WIPO에 작년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공업소유권의 국제적보호기구에 등장하여 특허제도의 국제화를 향해 출범하게 된 것이다.

국제화를 이루게 될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가 雙務間協定을 체결하거나 개별적 호혜주의 확인방식에서 多數조약으로 일원화하게 된 것이다. 이전엔 공업소유권상호보호협정을 46개국과 맺고 있었으나, 多數間협정인 파리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일백개국으로 협정국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는 특허문호개방확대로 특허정보의 국제적 협력관계가 활발해질 것이며, WIPO총회 회원으로서 국제적지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나, 한편으로는 소련등 공산국가에게도 공업소유권을 인정해야 하고, 실용실안 및 意匠權의 출원이 개방되어, 제품의 디자인 도장방법에 대한 외국출원전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기에 선진국의 상표등록출원, 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계의 대책은 시급한 과제이다. 다만 공업소유권상호보호협정이나 우선권주장의 적용대상국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출원할 때도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으로서 수동적인 태세에서 한발나아가 능동적인 자세로서 임해야 할은 물론이다. 즉 산업계는 기술과 창의를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다시 말해 기술도입 및 그 소화의 단계에서 이를 바탕으로한 개발 및 새기술을 창조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나라가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중견과 같은 개발에 대한 소극적태도로서는 기술개발과 창의를 왕성히 개발하는 나라에게만 유리한 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파리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공업소유권을 출원할 수 있는 나라는 100개국으로 많아졌으나 이 조약에서는 출원희망국에 대하여 각국별로 출원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필요하게 되는 것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이다. 이 조약은 1970년 6월 19일 35개국에 의하여 서명된 것으로 이 조약의 목적의 일부를 영문으로 쓴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The goal of PCT is to reduce the duplication of effort among patent offices resulting from the increased number of multi-national filings.

즉 이 조약은 한개의 발명에 대하여 여러나라에서의 보호를 구하는 경우의 국제출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한나라에 출원을 하면, 희망하는 조약국의 각나라에 별개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 된다. 이 조약은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출원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와 언어의 장벽을 줄이게 되고 많은 시간적낭비를 없애주는 효과는 대단히 큰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미생물공업에서 나오는 발명특허에서도 적용된 것이 부다페스트조약의 출원이라 할 수 있다.

② 부다페스트條約

일반적으로 발명은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공개되고 타인이 쉽게 열람하게 되나 미생물에 관한 특허는 서면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는 특수기관에 발명에 관계되는 미생물균주를 기탁할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미생물의 보존 및 분양은 전문기술과 많은 비용이 드는 보존설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특허청 단독으로 미생물을 취급하기도 어렵거니와 발명자의 입장에서도 미생물의 새로운 발명에 대한 특허신청을 여러나라에 보호신청코자 할 때 그때마다 미생물기탁절차를 대상국에 해야하는 종전의 방식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번거로운 기탁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영국정부가 1973년 WIPO에 한번만 기탁함으로써 여러나라에 기탁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길을 트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제의하였고 WIPO는 이를 전문가회의에서 3차회에 걸쳐 검토한 끝에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국제협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부다페스트 외교관회의의 기초가 되는 조약의 안이 공포되었다.

부다페스트외교관회의에는 파리동맹의 전가입국이 초청되었고, 여기서는 전 20조로된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란 이름의 조약을 1977년 4월 28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15개항에 이르는 동조약의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조약의 주요사항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서장

제 1조 동맹의 설립

제 2조 정의 : 본 조약 및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제 3조 : 미생물기탁의 승인 및 효력 (1) (a) 특허절차상 미생물의 기탁을 인정하거나 요구하는 가입국은 미생물이 가입국 영내 또는 그의 어떠한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인정된 국제기탁기관에 단 한번 기탁함으로써 특허절차상 모든 가입국의 특허청이나 지역별특허청에 기탁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기탁기관이란 미생물을 저장할 수 있고 배양능력을 가진 국가적으로 인정된 과학기구를 말한다. "국제기탁기관"의 자격을 갖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국의 보증이 필요하며 그러한 보증을 WIPO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것이 제 6조이다.

제 4조 : 재기탁

제 5조 : 수출입의 제한

제 6조 : 국제기탁기관의 자격

(2)항 기탁기구가 국제기탁기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 1) 영속성이 있어야 한다.
- 2) 과학적 행정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된 인원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기탁에 있어 모든 기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4, 5, 6 생략)

7) 규칙에 정한바에 의하여 기탁된 미생물에 관한 비밀유지조건에 따라야 한다.

8) 규칙에 정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 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미생물견본을 권리를 가진자에게만 제공하며, 권리가 없는 자에게는 결코 제공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규칙은 기탁된 견본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 및 받을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규칙 11).

제 7조 : 국제기탁기관의 자격 획득

제 8조 : 국제기탁기관자격을 종료 및 제한(자격의 박탈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제 9조 : 정부간공업소유권기구

제 10조(총회)와 제 11조(국제국)는 행정적 규정이다.

제 13조 : 조약의 개정

제 14조 : 조약규정의 개정

제 15조 : 조약의 당사자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동맹("부다페스트동맹")을 구성하고 파리동맹에 가입한 국가만이 이 동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제 16조 : 조약의 효력

조약의 효력은 5개국 이상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였을 때 발생한다.

제 17조 : 조약의 폐기

제 18조 : 본조약의 서명 및 사용어

제 19조 : 조약의 등록

제 20조 : 통지

이상 20개조로 되어 있다.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인정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의 규칙"은 다음의 15개항으로 되어 있다.

규칙 1 : 약어 및 용어, 서명의 해석

규칙 2 : 국제기탁기관

2의 1 법적자격

2의 2 직원 및 설비

2의 3 견본의 제공

규칙 2에는 제 6조의 내용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즉 기탁된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하고,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줄이기 위해 충분한 안전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

규칙 3 : 국제기탁기관자격을 획득

제 7조에 규정한 통지 및 통지의 집행에 관한 규칙으로 되어 있다.

규칙 4 : 국제기탁기관자격을 종료 및 제한 규칙

규칙 5: 국제기탁기관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는 국제기탁기관이 규칙에 규정한 기탁된 미생물에 관한 업무를 수행치 못할 경우에는 동기관의 자격을 종료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고, 또 기탁된 미생물을 다른 기탁기관에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

규칙 6: 원기탁 및 신기탁에 관한 규칙

규칙 7: 영수증의 발급

국제기탁기관이 기탁자에게 발행하여야 할 미생물기탁 접수증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 8: 과학적 설명 또는 제안된 분류지정의 차후 명시 혹은 補正

규칙 9: 미생물의 저장

이 규칙에는 최소 저장연수인 30년에 대한 저장기간과 비밀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제기탁기관은 미생물기탁어부에 관한 정보를 어떠한 자에게도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규칙 11에 규정한 자외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규칙 10: 생육성 검사의 의무 및 생육성 진술서발급에 관한 규칙이다.

규칙 11: 미생물전본의 제공에 관한 규칙으로, 전본의 제공방법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에 관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다.

규칙 12: 요금

국제기탁기관이 기탁에 수반되는 기탁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 13: 국제국에 의한 공고

국제국의 월간지를 통한 공고형식과 기탁기관의 최근명단을 공고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규칙 14: 대표단의 경비

규칙 15: 총회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

이상에서 요약한 내용에는 여러나라에 특히 출원한 기탁자에게 대단히 유리하고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즉 출원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제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출원자는 미생물 특허 출원한 모든 나라에 각각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고 조약국의 단 한나라에 기탁하면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자 국가에 기탁함으로써 기탁료 기탁의 제경비와 언어

통화의 사용에까지 잇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탁기관의 신뢰성에 관해서도 기탁기구가 국제기탁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구의 영속성과 신뢰성에 대한 보증을 국가나 정부간기구가 해야하므로 이는 곧 부다페스트동맹의 가입국에 대한 보증이 된다.

③ 선진국의 동향

1973년 영국정부는 미생물의 기탁절차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제의된 이 안은 1974년, 1975년, 1976년의 3차에 걸친 전문가회의가 소집되어 검토끝에 기초안을 마련하여 이 조약체결을 위한 부다페스트의교관회의(1977년 4월 14~28)의 기초가 되었다. 이 의교관회의에 투표권을 가진 국가자격으로는 파리동맹의 전가맹국으로 다음과 같다. 오스트레리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동독, 서독,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네갈, 소련,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유고슬라비아 등이다.

1979년 4월 30일부터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부다페스트조약의 국제회의가 열려 각 참가국이 자기나라의 동맹가입에 대한 입장을 토의하였다. 작년말을 기준으로 이 조약가맹국은 헝가리와 불가리아의 두 나라였지만, 미국, 서독, 일본, 스위스, 영국, 스웨덴, 프랑스가 가맹예정이고 미생물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대부분이 가맹지향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웃 일본의 특허청은 1979년 이 조약에의 가맹을 결정하였고 그 준비로서 통산성공업기술원, 미생물공업연구소에 "미생물기탁센터"를 설치하여 일본유일의 "국제미생물기탁기관"으로 발족시킬 방침이다.

한편 1979년 10월 29일 EPO(European Patent Organization)는 영국의 NCIB(National Collection of Industrial Bacteria)와 미국의 NRRN(Northern Regional Research Center)의 두 기관을 균주기탁기관으로 인정할 것을 발표하는 등 국제균주기탁기관의 인정의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되고 있는 것이다.

特許技術開發하여 産業發展이룩하자!